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(안)

2023. 9.

국 회 정 무 위 원 회

목 차

1.	감사의 목적1
2.	감사기간1
3.	감사실시 대상기관1
4.	감사반의 편성3
5.	감사일정 및 감사장소5
6.	주요 감사사항6
7.	감사방법6
8.	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9
9.	기타사항 9

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

1. 감사의 목적

「대한민국헌법」제61조,「국회법」제127조 및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입법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,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사기간

2023년 10월 10일(화) ~ 10월 27일(금)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총 45개)

가.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

(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1호·제2호·제3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비고
	o 국가보훈부	
	o 국무조정실	
제1호(국가기관)	o 국무총리비서실	
	o 공정거래위원회	
	o 금융위원회	
	o 국민권익위원회	
	o 개인정보보호위원회	
제2호(시・도)	없 음	

구 분	기 관 명	비고
	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	o 독립기념관	국가보훈부 소관 (3)
	o 88관광개발(주)	
	o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	국무조정실 소관
	o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	(25)
	o 한국소비자원	공정거래위원회 소관
	o 한국공정거래조정원	(2)
제3호 (공공기관 등)	o 예금보험공사	
	o 한국자산관리공사	
	o 한국주택금융공사	
	o 신용보증기금	금융위원회 소관 (7)
	o 한국산업은행	
	o 중소기업은행	
	o 서민금융진흥원	
계	44개 기관	

나.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

(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4호 해당기관)

구 분	기 관 명	비고
제4호(감사원 감사대상기관)	o 금융감독원	
계	1개 기관	

4. 감사반의 편성

- 가.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,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- 나.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, 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, 의원보좌직원, 속기사 등으로 한다.

[감사위원 명단]

직 위	교섭단체명	성 명	비고
위원장	더불어민주당	백 혜 련	
	더불어민주당	김 종 민	간사
		강 훈 식	
ما ما		김 성 주	
위 원		김 한 규	
		민 병 덕	
		박 성 준	

직 위	교섭단체명	성 명	비고
		박 재 호	
		오 기 형	
		윤 영 덕	
		이 용 우	
		조 응 천	
		최 종 윤	
		황 운 하	
		윤 한 홍	간사
위 원		강 민 국	
		김 희 곤	
		송 석 준	
	국민의힘	유 의 동	
		윤 주 경	
		윤 창 현	
		최 승 재	
	비교섭단체 (진보당)	강 성 희	
	비교섭단체 (무소속)	양 정 숙	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자	대상기관	장소
10. 10.(화)	국무조정실 / 국무총리비서실 /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(24개)	국회
10. 11.(수)	금융위원회	국회
10. 12.(목)	<자료수집 및 정리>	
10. 13.(금)	국가보훈부 /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/ 독립기념관 / 88관광개발(주)	국회
10. 14.(토)		
10. 15.(일)		
10. 16.(월)	공정거래위원회 / 한국소비자원 / 한국공정거래조정원	국회
10. 17.(화)	<현장국감> 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
10. 18.(수)	<자료수집 및 정리>	
10. 19.(목)	국민권익위원회 / 개인정보보호위원회	국회
10. 20.(금)	<자료수집 및 정리>	
10. 21.(토)		
10. 22.(일)		
10. 23.(월)	<자료수집 및 정리>	
10. 24.(화)	예금보험공사 / 한국자산관리공사 / 한국주택금융공사 / 신용보증기금 / 한국산업은행 / 중소기업은행 / 서민금융진흥원	국회
10. 25.(수)	<자료수집 및 정리>	
10. 26.(목)	<종합감사 - 비금융> 국가보훈부 / 국무조정실 / 국무총리비서실 / 공정거래위원회 / 국민권익위원회 / 개인정보보호위원회	국회
10. 27.(금)	<종합감사 - 금융> 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국회

[※] 종합감사 시 대상기관의 산하기관 기관증인 출석

6. 주요 감사사항

- 가. 당해 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
- 나. 당해 연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
- 다. 직전 연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- 라. 당해 연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
- 마.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바. 국정 현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7. 감사방법

가. 감사진행원칙

- 1)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, 자료제출요구,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, 현지시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2)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주질의는 5분</u>, <u>보충질의는 7분</u> 으로 하고, 추가질의 시간은 감사당일 별도로 정한다. 이 경우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.
- 4) 질의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는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 다만, 음성 또는 음향 출력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아니하되,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의 양해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.
- 5)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결로 정한다.
- 6) 그 밖에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
나. 보고 및 서류제출의 요구

- 1) 보고의 요구
 -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위의 주요 감사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한다.
 -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위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모든 위원실에 국정감사 전에 제출하도록 한다.
- 2) 서류제출의 요구
 - 위원회 의결에 의한 요구
 - 각 감사위원은 서류제출을 위원회 의결 1일 전까지 <u>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</u> 통하여 요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한다.
 - 이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9월 27일(수) 오전 10시까지로 한다.
 - 위원회 의결 이후 서류제출 요구
 - 9월 21일(목) 전체회의 의결 이후 <u>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</u>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갈음하여 위원장 명의로 <u>피감기관</u>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.
 - 이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자료요구를 받은 때부터 <u>3일 이내</u>로 한다.

다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1)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,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 이외의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 - 중앙행정부처 : 실·국장급 이상
 -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: 임원 및 기타 주요 간부급 이상
 - 비상임임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 비상임임원은 기관증인에서 제외

- 2) 기관증인 채택 후 감사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 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,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(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있 는 경우 직무대리자)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.
- 3) <u>일반증인과 참고인</u>의 경우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출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후 2시부터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한다.
- 4)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<u>출석요구</u>는 <u>위원회 의결</u>로 한다. 다만 신청한 위원이 사정 변경 등으로 <u>철회 또는 출석 일자의 변경을 요구</u>하는 경우에는 별 도의 의결 없이 <u>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</u>하여 철회 또는 출석 일자 변경을 할 수 있다.
- 5)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한다.

라. 증인 선서

-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여야 한다.
-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,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한다.
-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한다.
-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이 기립하여 대표로 받는다.
-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
마. 감사진행 및 순서

- 1) 감사개시선언(위원장)
- 2) 위원장의 인사
- 3) 증인선서
- 4)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
- 5) 업무현황보고 청취
- 6) 질의 및 답변(또는 증인 신문 및 증언)
- 7) 감사종료 선언(위원장)

8.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

-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.
-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,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, 건의사항,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등을 포함한다.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다.

9. 기타사항

- 감사활동비, 출장여비, 증인·참고인 출석여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.
-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, 감사방법 등 세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